

서울특별시의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09
----------	-----

2012년 10월12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7. 11. 서영갑 의원 외 21명
- 나. 회부일자 : 2012. 7. 12.
-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12. 10. 12 상정)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서영갑 의원)

제안이유

- 최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와 국가 간 경쟁이 확대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한 저성장·저고용의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중소기업이 서울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축으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 경제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성장 동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 1) 선진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를 경쟁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서울소재 중소기업들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일자리 창출과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위원 수는 19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3)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박 노 수)

□ 검토요지

-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8조 등에 근거하여 구성 되는 것으로,
- 본 결의안은 서울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지원방안과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한 것임.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제4항에 의거 관할구역 내 사업자, 시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녹색경영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바,
- 우리시 녹색산업 성장에 부응하고, 녹색기업의 사업안정화 및 성장촉진에 기여하고자 구축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서울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녹색기업 경영혁신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녹색인증 취득 지원, 녹색지원사업 정책수요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안건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서울소재 중소기업들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가 각종 지원정책 제시와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서울시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기술 R&D지원 업무는 기후환경본부의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중소기업 산학협력 사업 등은 경제진흥실의 경제정책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동 안건에 의해 구성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의 활동범위에 서울시의 여러 부서의 업무가 관련되어 있음. 따라서 동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제1항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는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규정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8조제2항¹⁾에 따른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 동 안건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는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중첩되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 제38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의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909
----------	-----

발의년월일 : 2012년 7월 11일

발의자 : 서영갑의원외 21명

1. 주 문

- 가. 선진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를 경쟁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서울소재 중소기업들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일자리 창출과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위원 수는 19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가. 최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와 국가 간 경쟁이 확대되고 있음.
- 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한 저성장·저고용의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중소기업이 서울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축으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 경제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성장 동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8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붙임 : 서울특별시의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띄고 있고, 특히 산업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와 대기업 위주의 육성정책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정부는 이러한 경제 구조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확대를 목표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장기 비전으로 발표하였다.
- 선진 국가들 역시도 기후변화 문제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

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에 막차를 가하고 있다.

- 국내 중소기업은 국민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해왔음에도 인건비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이미 성장의 한계에 놓여 있어, 향후 창조적 성장엔진으로서 국민경제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선점할 필요성이 있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미래 신성장 동력 및 서울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미래가치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지원방안과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한다.

2012. 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